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중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분담금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되어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산정·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현행 제21조제1항부터3항 삭제)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

나. 예산조치 : '24년 보상재원 관련 정부출연금 예산 반영

다. 합 의 : 법률 개정 시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약사법」 제2조”를 “「약사법」 제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제조물책임법」”을 “「제조물 책임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을 “(보상재원의 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분담금”을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마련된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보상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법 제26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 의료, 법률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 4. ~ 7. (생 략)	제14조(감정단의 업무 지원 인력) ----- ----- ----- ----- ----- -----.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2조----- ----- -- 3. 「약사법」 제2조----- ----- 4. ~ 7. (현행과 같음)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안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으로 한다. 1. 「제조물책임법」 등 피해구제의 근거가 되는 법령 2. ~ 4. (생 략)	제16조(조정결정 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제조물 책임법」 ----- ----- 2. ~ 4. (현행과 같음)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제21조(보상재원의 관리 등) <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
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
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
(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
의 30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분담해야 할 비용을 산정·부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
법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국
민건강보험공단에도 그 비용 및
징수일을 징수일 1개월 전까지

제>

<삭 제>

<삭 제>

알려야 한다.

-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
· 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
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이 적절한
지를 2019년 4월 8일까지 검토
하여 분담비율의 조정 또는 유
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 법 제46조 제2
항에 따라 마련된 의료사고 보
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보상
재원”이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연 락 처	044-202-2474